

## 신·구조문 대비표

&lt;별 표 1&gt;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품</li> <li>(2) 소모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항 생략</li> <li>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 물품</li> <li>③ 항 생략</li> <li>(2) 소모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③ 항 생략</li> <li>④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손 되기 쉬운 물품</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항 생략</li> <li>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의 물품</li> <li>③ (현행과 같음)</li> </ul> </li> <li>(2) 소모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③ 항 현행과 같음</li> <li>④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손 되기 쉬운 물품</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상태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ul> </li> </ul>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9. 11. 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6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이종현)

- 가. 폐지이유
  - 건축법의 개정으로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99.7.31)됨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본 안은 1993년 6월 영등포구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한 후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례가 일치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99. 2. 28 (법률 제5895호)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공포 제3665호('99.7.31)에 의거 건축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서울시 산하)에 위임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99.7.31)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그 기능을 상실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자치단체간 여전히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나 시 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될 때에 서울시 전구가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93
------------	----

제출년월일 : '99. 10.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폐지이유

건축법의 개정으로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99.7.31)됨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폐지

#### 3. 폐지근거

- 건축법제4조제5항('99.2.8개정 법률 제5895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공포('99.7.31개정 조례 제3665호)

#### 4. 조례(안) 별첨

####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